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시장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,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- 현행 규칙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(안 제37조의2 제4항)
-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
 - 안 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제3항 단서
 - 현 행 : “법 제75조(청원의 심사·처리)”
 - 개정안 : “법 제83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,
-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단체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이나 검토 의견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현안의 신속한 처리 및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·감독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시정의 관심 사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그 의견을 밝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 보고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